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이연주\* · 김승권\*\*

1990년대 중반부터 이혼율이 급증하여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모자가정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모자가구의 형성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편부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고 따라서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모에 비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12세 이하 아동 표본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 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친가구의 모와 부, 별거가구 모와 부, 무배우 모와 부 중에서 무배우 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배우 모에 비해서 무배우 부의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자만 볼 때 직업적 지위는 더 낮았다. 무배우 부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도 무배우 모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았다. 다음, 분석에서 암시된 저소득 여성의 자녀별거성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이혼모 표본을 이용하여 자녀와 비동거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적을수록 자녀 비동거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자녀 비동거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보였고,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 비동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구의 분포를 보면 무배우 모의 수가 무배우 부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양부모가구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무배우 부 가정의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가구유형, 부자가구, 모자가구, 교육수준, 이혼모

### I. 서론

#### 1. 연구배경

한부모 가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 출산 등으로 나

\* 하와이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yjee@hawaii.ed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imsk@kihasa.re.kr

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출산의 경우 부모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편부나 편모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기대수명 80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낮은 사망률은 미성년자녀를 둔 청장년층 부모의 사망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이혼이나 별거에 기인한다.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 이후에는 2.5이상의 조이혼률이 유지되어왔다. 2003년에 최고 조이혼률 3.6에 이르렀고, 그 전후 연도에는 각각 3.0과 2.9를 기록하였다(Lee, 2006 국가통계포털, 2010). 이혼신고 통계에 의하면, 이혼부부 중 20세 미만 자녀를 둔 비율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1999-2008년 사이 10년 동안 전체 이혼부부의 약 3분의 2정도가 20세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가정의 평균자녀수는 약 1.6명 정도이다. 추계하면, 10년 동안 약 142만 명의 20세 미만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그림 1). 부모가 이혼하는 아동의 연령분포나 이혼 후 가족형태의 변화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종단적인 통계는 없는 것 같으나, 이들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일정기간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할 것이다.

1960년대부터 높은 이혼율을 유지해온 서구의 경우 일찍부터 이혼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많은 연구에서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이혼가정 자녀들의 정서 및 행동발달, 사회성, 건강,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Amato and Sobolewski, 2001; McLanahan, 2002; Sun and Li, 2002; Frisco, Muller, and Frank, 2007; Amato, 2010; Potter,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자녀발달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발달 특성의 상당부분이 이혼 이전에 이미 나타난 특성들이어서, 순수한 이혼의 효과라기보다는 이혼과 관련된 인성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Cherlin, 2005; Powers, 2005; Strohschein, 2005; Amato, 2010).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McLanahan, 2002; Amato, 2010).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한인영 외, 2007; 정계숙, 2008), 많은 연구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구의 저소득은 가정파탄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한부모 가구 자녀양육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김현정, 1999; 김승권·김태진·김유경·송수경, 2001; 김미숙·박민경·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2; 김혜란·박은미·오정수·정익중·허남순·홍순혜, 2004;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2005; 조윤주, 2006).

이혼과 자녀발달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는 우선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 인구센서스와 1993-2008년 이혼신고자료 등 두 종류의 전국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가구구성형태와 편부 및 편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고용상태 및 직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가 허용하는 한 양부모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2005년 센서스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동거 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연구는 특히 12세 이하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모자 부자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비교에 대한 연구 가설

미성년 자녀가 속한 가구의 가장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등 가구 소득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흔히 배경변수로는 고려되지만 그 자체를 조명하는 연구는 흔치않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한부모 가정의 환경을 다루고 자녀양육 및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논의하고 있지만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는 모자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거의 상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체인구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도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따라서 편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부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다수 선행 연구가 모자가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나(장혜경·민가영, 2002 강기정, 2005; 김오남, 2005; 송다영, 2006 최명숙, 2005) 부자가구와 모자가구의 구별없이 한부모가구 전체를 표본으로 삼고 있다(최혜경, 1997; 최외선·김갑숙·최선남, 2001). 부자가정의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선행연구들도 있는데 모자가정과 비교하지 않거나(이상현, 1998) 아예 저소득 가정으로 논의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2 정운남, 2002; 정종미, 2005).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부자가정에 비해 모자가정의 더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사망률감소와 더불어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이혼율로 인해 최근 한부모 가정의 특성은 과거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대상

으로 1984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편모의 교육수준이 편부보다 낮았는데(유희정 외, 1984) 당시 한부모 가정의 발생은 현재에 비해 사별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아무튼 표본 전체 한부모의 75%정도가 초등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이어서 최근의 한부모집단과는 특성 차이가 뚜렷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근래의 선행연구에서도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평균소득이 낮거나 이혼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승권 외, 2001; 김미숙 외, 2005), 편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편부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편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주로 조부모)과 동거하는 비율도 편모보다 높다고 하는데(김승권 외, 2001) 이것은 편부가 편모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나마 취업기회가 주어지는 서비스업종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편모가정의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구의 생활비 지출내역 중 주거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보면(이태진·노은정, 2002), 주택가격 등 높은 주거비용도 편모가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디어 등에서 묘사하는 바대로 기혼여성이 가출함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자녀는 편부와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경우는 이혼과 함께 대부분 남편이 가정을 떠나고 부인과 자녀가 그동안 살던 집에 남는다고 하는데(McLanahan, 2002 Cherlin, 2005; Amato, 2010),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 후 거주형태 변화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기혼여성의 가출은 분할할 재산이 없는 우리나라 저소득 가정에서 관찰되는 이혼의 한 독특한 유형인 것 같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는 교육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서 형성되는 편부가구로 인해 평균적으로 편모보다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 양육과 교육이 주로 어머니의 역할인 사회 환경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자원이 결여된 편부가정은 편모가정의 경우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실질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편모가구의 수가 편부가구의 수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편모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편모가구 뿐만 아니라 편부가구의 실태 파악도 중요하다. 이혼과정의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책임 분배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 본 연구는 현재 12세 이하 아동이 속한 가구 중 편부와 편모가구를 비교하여 편모보다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첫째,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하였다. 많은 한부모 선행연구가 주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발생은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에도 해당한다. 본 연구는 전체인구 표본에서 나타난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의 교육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직접 비교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느 한쪽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소득만 집중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12세 이하 아동을 표본으로 삼아 이들이 속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모가 비가주인 경우에도 분석에 포함된다. 12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센서스에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만 친어머니와의 동거여부를 질문하였다는 자료상의 제약도 있지만 12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가족생활 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모특성의 차이를 통제하는 효과도 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이찬진, 1999) 자녀와 동거할 부모의 결정과정도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일반화하고자 한다. 넷째,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모의 자녀 비동거 성향 분석을 통해 한부모 가정 형성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가설 검증을 강화하였다.

## II. 자료와 방법

### 1. 2005 인구센서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 표본자료 B형을 사용하였다. 이 표본에는 집단가구가 아닌 일반가구만 포함되어있는데 총 316,536가구 892,009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아동표본과 이혼모 표본 등 2개의 하위표본을 추출하였다. 아동표본은 어머니 동거여부가 조사된 12세 이하 아동모두를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아마도 조사 당시 만 연령 계산상의 혼란 등의 이유로 12세 아동 중 일부(2,483명)는 어머니 동거여부가 조사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총 141,401명으로 구성되었다. 12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보다 2005년 센서스자료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친어머니가 같은 가구에 동거하는지 질문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 등의 이유로 부

모와 별거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센서스 자료의 구성상 부모의 결혼상태 이유로 인한 별거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모 표본의 경우, 아동표본과 일관성을 고려해 모든 자녀가 최근 이혼으로 끝난 결혼생활 중에 출생하여 조사 당시 12세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만 추출하였다. 즉 자녀가 있다고 대답한 이혼여성 중 결혼 당시 35세 미만이고 지난 13년 이내에 결혼한 여성만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혼모 표본은 1,967명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표본으로는 가구유형별로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직업(근로직과 사무직)을 분석하여 편부와 편모의 특성을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하였고, 부모가 가구주가 아닐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도 분석하였다. 이혼모 표본으로는 비동거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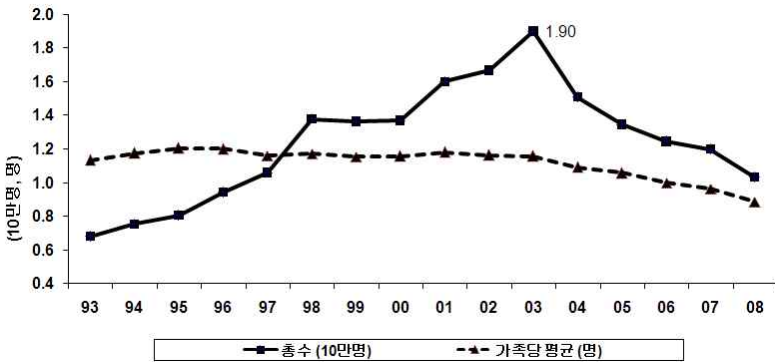
센서스자료에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동거여부는 포함되어 있으나 어떤 가구원이 어머니인지 확인하는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추정하였다. 즉 아동이 가구주의 자녀이면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 중 여성을 어머니로, 아동이 가구주의 손자녀 일 경우 가구주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중 기혼여성을 어머니로 추정하였다. 해당여성이 한명일 경우 추정은 확정적이지만, 두 명 이상일 경우(대체로 가족관계에 따라 가구원 번호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구원번호의 순서상 가까운 사람을 어머니로 추정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0.1% 미만의 적은 숫자이었다. 12세 이하 아동의 약 92%가 가구주의자녀이고 7% 정도가 가구주의 손자녀이다. 아동이 기타 가구원인 경우는 1% 정도인데 모의 추정이 불확실하여서 가구유형분석에는 포함하였지만 부모특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센서스에서 동거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나,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추정하였다. 모의 추정에서와 같이 아동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 부의 추정은 확정적이다. 반면 아동이 가구주의 손자녀일 경우 모의 경우와 달리 확정적인 추정은 불가능하다. 가구주의 남성 기혼자녀 혹은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부의 추정은 상당히 유력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가구주의 남성 기혼자녀 혹은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복수일 경우 부의 추정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구구성은 극히 미미한 비율이었다. 아동이 기타 가구원인 경우에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혼 남자가 있는 경우 아버지로 추정하여 가구유형분석에 포함하였지만, 앞에 서술한대로 부모특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모와 부의 추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본 연구의 편부 편모 특성 분석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

이 가구주의 자녀일 경우 부모의 추정은 확정적이고, 가구주의 손자녀일 경우 부모의 추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모의 경우 동거여부가 조사되어 있으므로 추정 오차는 단지 조부모가 두 명 이상의 여성 기혼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와 동거할 경우뿐인데 우리나라 가족유형의 분포에서 부모가 복수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오차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동의 부의 경우, 아동과 별거하는 부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양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조부모가 다른 기혼아들과 동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체적으로 부의 추정에 오류가 생길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아동의 모나 부가 아닌 다른 기혼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오류 추정한다고 하여도, 모나 부의 형제자매 혹은 그들의 배우자일 것이므로 교육수준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추정된 가구원이 친부 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아동과 동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추정 오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로 추정이 가능한 가구원이 복수일 경우, 다른 가구원으로 바꾸어서 분석해 보았으나 본 연구에 보고된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아동이 기타 가구원인 경우에도 가족관계상 기타 가구원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예를 들어 가구주의 형제자매, 기타가구원 등) 기혼여성이나 기혼남성이 있다면 아동의 모 또는 부로 추정하여서 부모특성을 분석해 보았으나 본 연구에 보고된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1>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총수 및 가족당 평균 자녀수, 1993-2008년



## 2. 1993-2008년 이혼신고자료

통계청에서는 통계쇼핑몰을 통하여 매년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인구동태 신고 자료를 전수 원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고자 익명성을 위하여 주소지는 구-시-군 단위까지만 포함되어있지만 신고내용에 관한 변수는 거의 모두 포함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자료 중 20세 미만 자녀수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III. 분석 결과

#### 1.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수 추이

<그림 1>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총수와 각 이혼가족별 평균 자녀수를 보여준다. 이 중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이혼한 가족의 자녀 중에는 본 연구 분석표본의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연도별로 이혼부부의 미성년 자녀수가 급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세 미만 총 자녀수는 이혼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03년 최고에 달해 약 19만 명을 기록하였다. 2004년부터 이혼건수 및 이혼부부 중 20세 미만 자녀를 가진 비율이 함께 감소하여 총 자녀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약 10만 명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10년 동안 총 약 142만 명의 20세 미만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한편 이혼부부별 평균 자녀수는 1995년과 1996년 약 1.2명을 기점으로 완만히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조금 더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 약 0.9명을 기록하였다. 그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각 연도별로 이혼부부 중 20세 미만 자녀를 가진 비율은 1995-1996년 74%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54%에 이르렀는데, 20세미만 자녀가 있는 이혼부부 중 평균자녀수는 약 1.6명으로 16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 2.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와 동거여부 및 동거부모의 가구주 여부에 따른 가구유형 분류

전체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와의 동거 상태를 보면, 약 88%가 양부모와 모



두 함께 살고 있다. 약 9%는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3%는 양부모 모두 없다 (표 1: 그림 2). 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부모의 상당수(편부 중 23%, 편모 중 56%)가 유배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부부가 결혼관계상 별거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거나 자녀의 교육 등 다른 이유로 가구구성상 별거중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편부모들을 편의상 별거형 편부모라고 명명하여서 무배우 편부모와 구별하고자 한다. 뒤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별거형 모의 경우 양부모 가구 모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별거형 부는 무배우 편부와 오히려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별거형 모에 비해서 별거형 부의 경우 배우자와 별거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무배우 편부모의 결혼상태는 대부분 이혼이고 사별은 편부 10%, 편모 23% 정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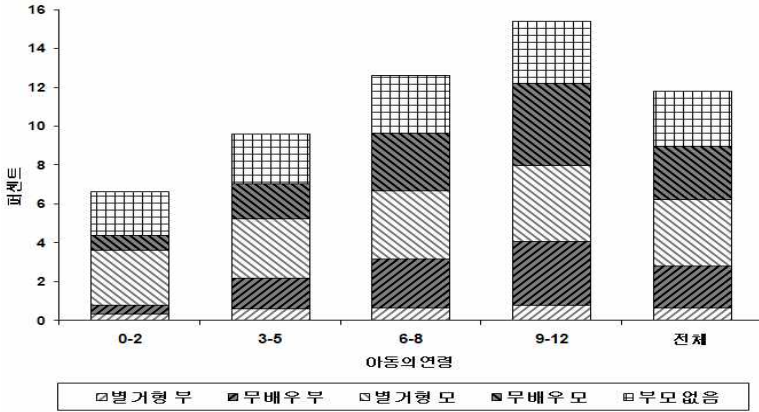
〈표 1〉에 의하면 12세이하 표본 아동 중 무배우 편부와 동거하는비율이 2.2% 무배우 편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2.7%로 나타나 부자가정이 모자가정의 약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추정방법에 의하면 편부가정이 다소 과대추정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점을 고려한 후에도 적어도 7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별거형 편부모를 포함하면부자가정은 모자가정의 45%정도이다. 〈그림 2〉에 의하면 무배우 편부와 편모의 비율은 아동의 연령과 함께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12세 이후 청소년의 무배우 편부모의 비율이 10%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별거형 편부모 비율과 양부모 모두 부재의 비율도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미미한 편이다.

<표 1>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동거상태별 가구유형과 가구주 분포

가구주	단위: 명 (%)						전체
	양친가구	별거형 부	무배우 부	별거형 모	무배우 모	부모 없음	
부	118,616 (95.2%)	636 (68.9%)	2,174 (70.2%)	-	-	-	121,426 (89.5%)
모	1,249 (1.0%)	-	-	4,084 (84.4%)	3,283 (85.0%)	-	8,616 (6.1%)
조부모	4,739 (3.8%)	283 (30.7%)	906 (29.3%)	727 (15.0%)	534 (13.8%)	2,854 (70.8%)	10,043 (7.1%)
기타	47 (0.0%)	4 (0.4%)	15 (0.5%)	27 (0.6%)	46 (1.2%)	1,177 (29.2%)	1,316 (0.9%)
전체	124,651 (88.1%)	923 (0.6%)	3,095 (2.2%)	4,838 (3.4%)	3,863 (2.7%)	4,031 (2.9%)	141,4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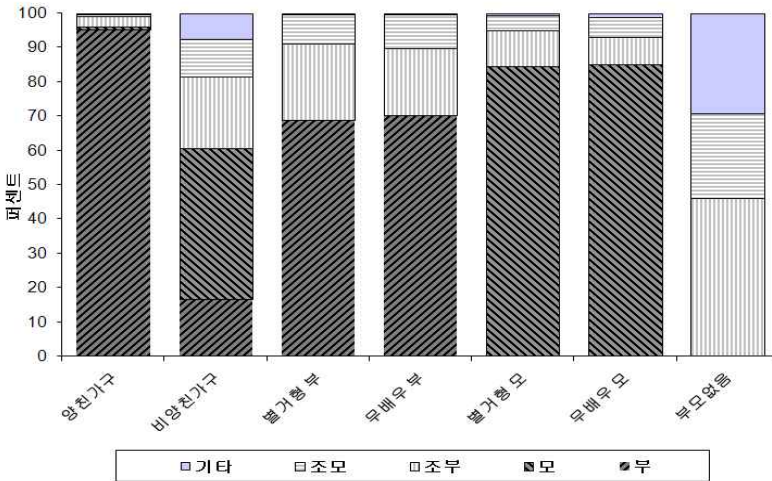
자료: 200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그림 2> 전체 12세 이하 아동 중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비율



자료: 200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그림 3> 12세 이하 아동의 가구 유형별 가구주 분포



<표 1>과 <그림 3>에 의하면 양부모 동거가구에서 부나 모 대신 조부모나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인 비율은 약 4%인데 비해, 편부모가구에서 아동의 부나 모가 가구주가 아닌 비율은 별거형 및 무배우 유형 모두에서 편모의 경우 약 15%, 편부의 경우 약 30%이다. 즉, 편부가 가구를 대표하는 비율이 편모가 가구를 대표하는 비율보다 현저히 낮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별거형 부모와 무배우 부모

모두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취업률이 높고, 양부모 가구의 경우 남편이 가구를 대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이다. 자녀를 둔 별거, 이혼 혹은 사별 남성이 여성보다 그들 부모(즉 아동의 조부모)에게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선행연구와 일관적이다(김승권 외 2001). 이런 성별 차이는, 가구주의 결혼상태 만으로 가족유형을 파악할 경우 편부가구의 숫자를 과소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가구 구성이 아동에게 어떠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의미하는지 알아본다.

### 3. 12세 이하 아동의 편부와 편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1) 부와 모의 교육수준 비교

가구유형별 부와 모의 교육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아동의 부나 모가 가장인 가구와 조부나 조모가 가장인 가구들을 분리하였다(그림 4의 왼쪽과 오른쪽). 많은 자료에서 가구주특성을 부각하고 다른 가구원 특성은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구주 여부별로 집단을 나누었다. 각 집단에서 양부모, 별거형 부와 모, 무배우 부와 모의 가구들로 나누었다. 참고로, 가구주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유형별로 부모특성을 본다면, 앞 <그림 3>에서 본대로 아동의 부모가 가구주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구주인 부모특성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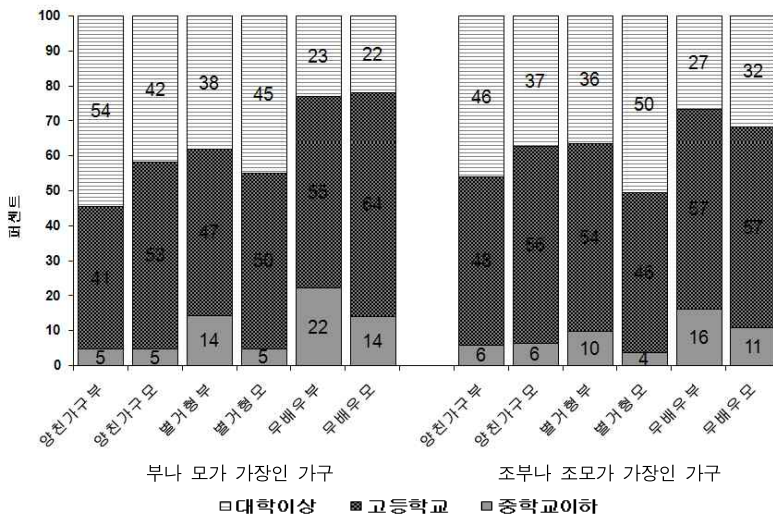
먼저 아동의 부모가 가구주인 집단을 살펴보면, 양부모가구의 경우 부의 교육수준이 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왼쪽). 부의 경우 절반이상(54%)이 대학교육을 받은 반면, 모의 경우 42%만 대학교육을 받았다. 중학교이하의 학력은 부와 모 모두에서 약 5%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편부모의 경우 교육수준의 성별 차이가 반대로 나타났다. 별거형과 무배우 모두에서 편부의 교육수준이 편모보다 낮았다. 편부의 중학교이하 학력의 비율이 편모에 비해 특히 높았다. 별거형 편부모의 경우 편부의 14% 편모의 5%가 중학교이하의 학력이고, 무배우 편부모의 경우 편부의 22% 편모의 14%가 중학교이하 학력이었다. 별거형 편부모의 경우 여성의 대학학력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45%, 38%) 무배우 편부모의 경우 여성의 고등학교 학력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64%, 55%). 별거형 편부모의 고등학교학력의 비율과 무배우 편부모의 대학학력비율은 남녀에서 비슷하다(순서대로 47%, 50%, 23%, 22%).

성별로 가구유형별 교육수준을 다시 정리해보면, 남성의 경우 양부모가구에

비해 무배우 부의 학력이 훨씬 낮고 별거형 부는 그 중간정도이고, 여성의 경우 별거형, 양부모, 무배우의 순서로 높다. 별거형 가구는 가구주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른데 그 생성과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녀양육이 통상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와의 별거는 부부관계의 파탄을 포함하여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반면 아버지와의 별거는 직장이나 자녀의 교육 등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의 선택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있는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이혼보다 별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별거형 모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결혼상태로 인한 별거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구유형별 부와 모의 교육수준 차이는 조부모가 가구주인 경우에도 부모 자신이 가구주일 때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4 오른쪽). 별거형과 무배우 모두에서 편부의 학력이 편모의 학력보다 낮았다. 별거형 편부의 10% 편모의 4%가 중학교이하의 학력이고, 무배우의 경우 편부의 16% 편모의 11%가 중학교이하이다. 별거형, 무배우 모두의 경우에서, 편모의 대학학력의 비율이 편부보다 높았다(별거형 모 50%, 부 36%, 무배우 모 32%, 부 27%).

<그림 4> 12세 이하 아동의 가구 유형별 부와 모의 교육수준 비교



〈그림 4〉의 결과를 각각의 가구유형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아동의 부모의 가구주 여부에 따라 일정한 학력 차이가 나타난다. 양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집단이 가구주가 아닌 집단보다 학력이 높은 반면, 편부모의 경우 가구주인 집단(즉,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 집단)보다 그들 부모의 가구에 편입된 집단의 학력이 조금 높다. 즉, 가구주가 아닌 집단에서 중학교이하의 비율이 낮고 대학이상의 비율이 높다. 편부보다 편모의 경우 가구주여부에 따른 학력차이가 더 뚜렷하다. 대학학력이 있는 편모가 중학교이하나 고등학교학력의 편모보다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지를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2) 조부모 가구주의 교육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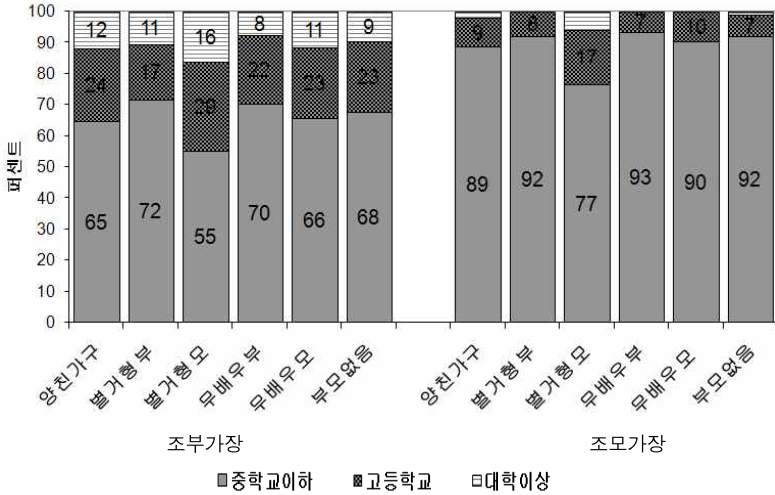
아동의 조부모가 가구주인 경우 그들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보다 훨씬 낮아서 대부분(조부의 경우 3분의 2, 조모의 경우 8할 가량)이 중학교이하의 학력이다(그림 5). 앞 〈그림 4〉에서 아동의 편부모의 교육수준은 조부모가 가구주일 때 조금 더 높았지만, 과연 조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시된다. 적어도 주거 등 가족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가사나 자녀 돌보기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아동의 편부의 교육수준이 편모의 교육수준보다 약간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부모의 교육수준도 편부가구에서 편모가구보다 조금 낮았다. 역시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구유형 중에서 별거형 모 가구의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다.

## 3) 부와 모의 고용상태 및 직업 비교

〈그림 6〉에 12세 이하 아동의 부와 모의 고용상태 및 직업을 가구유형별 가구주여부별로 제시하였다. 고용상태와 직업을 통합하여 모두 세 범주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했는데, 먼저 직업이 없는지 있는지를 구별하고 직업은 크게 육체노동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었다. 사무직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을 포함하고, 육체노동직은 그 외의 직업으로 서비스, 판매, 농업, 생산직, 단순노동직 등을 포함한다.

부와 모의 고용 및 직업지위는 교육수준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친가구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양친가구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무직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노동직 및 사무직의 비율이 훨씬 낮다. 이런 성별 차이는 양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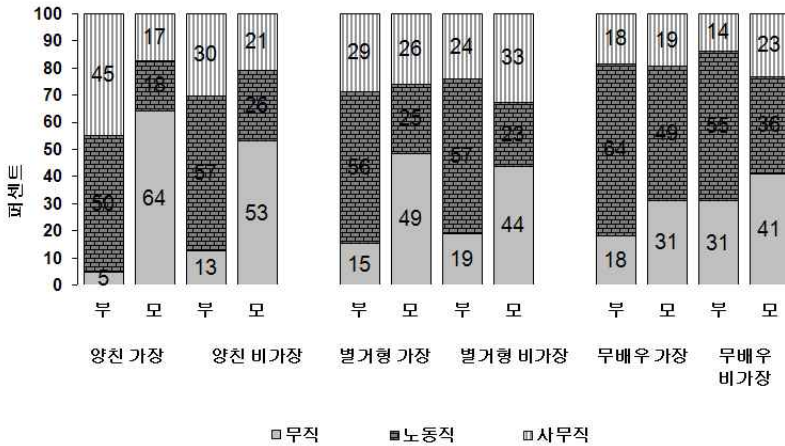
<그림 5> 12세 이하 아동의 가구유형별 조부모 가장의 교육수준:  
편부와 편모 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이 가구주일 때 조부모가 가구주일 때보다 더욱 크다. 한편, 별거형이나 무배우의 편부와 편모의 사무직 종사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편부모가 비가구주인 가구에서는 오히려 모의 사무직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편부와 편모의 차이는 노동직과 무직의 비율에서 나타난다. 부는 모보다 무직비율이 훨씬 낮고 그 비율의 차이만큼 노동직비율이 높다. 다시 말하면, 편부는 고용 면에서만 보면 편모보다 우위에 있지만 직업 내용면에서 노동직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편모보다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다. 무직을 무소득으로 해석했을 때 평균 소득면에서 노동직의 비율이 높은 남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사무직의 비율이 비슷하고, 취업중인 경우만 보면 편모의 사무직 비율이 편부보다 훨씬 높아서 취업중인 편부 편모의 평균수입은 편모쪽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편모의 경제적 지위는 편부의 평균적 지위보다 높거나 낮거나 양분되어 있다고 하겠다.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도 직업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빈곤층에 속할 것이다(김학주, 2006). 그러나 무직 여성에게는, 특히 고학력인 경우,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자녀양육비등 다른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림 6>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부모의 성별로 가구주와비가구주 집단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가구유형에서 가구주일 때에 비해서 비가구주일 때

<그림 6> 12세 이하 아동의 가구유형별 부모 고용상태 및 직업



무직의 비율이 높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다. 앞에서 비가구주 편부의 교육수준이 가구주인 편부보다 조금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직 등 낮은 직업적 지위가 조부모의 가구로 편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 같다. 교육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별거형 부의 직업지위는 양친가구부와 무배우 부의 중간정도이다.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가구주여부와 직업지위의 관계가 가구유형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는데, 양친가구 모와 별거형 편모의 경우 각 유형에서부의 경우와 반대로, 모가 가구주일 때에 비해서 비가구주일 때 무직의 비율이 낮고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즉, 양친가구 모와 별거형 편모의 경우 사무직등 직업을 가지기 위해 조부모의 가구에 편입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무배우 모는 일반적으로 무직의 비율이 양친가구모나 별거형 모보다 낮은 한편, 무배우 부와 같이, 가구주일 때보다 비가구주일 때에 무직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비가구주일 때 더 높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무배우 모는 양친가구 모와 별거형 편모와 마찬가지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조부모 가구로 편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무직일 때는 조부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조부모의 가구에 편입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아동의 어머니 중에서는 무배우 가구주가 노동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가구유형에서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무직비율은 가장 낮다. 무배우 편모 가구주는 조부모의 지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남성 가구주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여 노동직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림 4-6>의 결과를 종합하면, 양친가구의 부와 모의 유형과 반대로 편부

의 교육수준이 편모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취업률은 편부가 편모보다 높지만, 직업적 지위는 편부가 편모보다 낮은 편이어서 노동직비율이 높고 사무직비율이 낮다. 또 아동부모의 가구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가설에서 제시한대로 최저 소득층에서는 모자가정의 형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는 무배우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그리고 조부모동거 상태별 자녀비동거 성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혼모 표본을 분석한다.

#### 4. 이혼여성의 자녀와의 별거실태 및 별거요인 분석

같은 2005년 센서스 2% 자료를 이용하여 이번에는 이혼한 어머니의 관점에서 자녀와의 별거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앞의 아동자료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가 12세 이하로 추정되는 집단을 추출하였다. 즉, 결혼연령이 35세 이하로, 결혼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13년 전 이후이고, 한명 이상의 출산자녀가 있으며, 현재 44세 이하인 이혼여성으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2005년 센서스에는 모든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 동거자녀수, 비동거 자녀수가 성별로 보고되어있다.

##### 1) 별거실태

자녀비동거 요인의 다변량 로짓 분석에 앞서 별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몇 주요 설명변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모든 자녀가 12세 이하라고 추정되는 전체 이혼여성의 71%가 모든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와 동거하거나 모든 자녀와 별거하고 있었다. 일부 자녀만 같이 사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전체 표본의 2%미만이었다. 70% 이상의 이혼여성이 모자가구를 이룬다면 이들의 전 남편이 형성하는 부자가구는 30% 이하로 계산되는데 이 분포는 앞 12세 이하 아동표본에서 나타난 무배우 편부모의 비율과 차이가 크다. 이 차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5년 센서스 자료만으로는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다. 먼저 아동표본은 아동의 입장에서 가구를 분류하였으므로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부모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편부의 평균 자녀수가 편모보다 많을 경우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 의하면 이혼모의 자녀수 분포로 계산하더라도 역시 약 70% 정도가 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설명



<표 2>. 이혼여성의 총 출생아수, 교육수준, 가장어부별 비동거 자녀수 분포

비동거 자녀수	총 출생아 수							
	1		2		3+		계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0	829	73.9	526	68.9	49	60.5	1,404	71.4
1명 이상			33	4.3	3	3.7	36	1.8
모든 자녀	293	26.1	205	26.8	29	35.8	527	26.8
계	1,122	100.0	764	100.0	81	100.0	1,967	100.0

비동거 자녀수	교육 수준 (표본: 이혼 당시 결혼지속연수 10-13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계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0	61	61.0	520	70.0	186	77.5	767	70.8
1명 이상	39	39.0	223	30.0	54	22.5	316	29.2
계	100.0	100.0	743	100.0	240	100.0	1,083	100.0

비동거 자녀수	고용상태							
	사무직		노동직		무직		계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0	331	73.7	580	67.8	493	74.5	1,404	71.4
1명 이상	118	26.3	276	32.2	169	25.5	563	28.6
계	449	100.0	856	100.0	662	100.0	1,967	100.0

비동거 자녀수	가장과의 관계							
	가장		자녀		기타		가장, 부모 동거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0	1038	71.7	284	75.7	82	56.9	82	56.9
1명 이상	410	28.3	91	24.3	62	43.1	62	43.1
계	1448	100.0	375	100.0	144	100.0	144	100.0

주: 1) 자료: 2005년 인구 센서스 2% 표본

2) 표본은 모든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추정되는 이혼여성, 즉, 35세 이하의 결혼연령으로 조사 당시로부터 13년 전 이후에 결혼하여 1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현재 19-44세인 이혼여성

으로는, 편부의 추정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상당한 편모 편부 분포차이는 부의 추정 오류의 가능한 오차범위를 벗어난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아동표본에서 모와 동거한다고 조사된 아동의 가구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부재로 처리하였는데, 센서스 조사과정이나 자료입력과정에서 생긴 무작위적인 단순 오류일 수도 있지만, 아동의 모가 복수의 거처를 두고 있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가 일터에서 주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 개념적으로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

구에 속하지만 실제 주 거주지는 다른 곳인 상황이다. 사회조사에서는 전자의 가구개념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인구조사에서는 중복된 거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서비스나 판매직의 경우 이런 거주유형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아동의 가구를 편모가구라고 정의해야 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본 연구의 아동표본분석에서는 편모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편모가구가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구조사 당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혼모가 비동거 자녀를 총 출산아 수에서 누락하였거나 아예 이혼이라는 결혼상태를 밝히지 않았다면 두 표본간에 이런 방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이혼사실이나 총 출산 횟수를 누락 혹은 과소 보고하였을지 추측하기 어렵다. 또 다른 중요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편모의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세 이하 아동을 둔 이혼모표본은 센서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매우 소극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을 둔 전체 이혼모를 대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본여성의 어느 자녀도 12세가 넘지 않도록 제한되었고 초혼이혼만 포함되었다. 표본특성을 보아도 이혼모표본의 편모들이 아동표본에 있는 무배우 편모보다 평균 2세 이상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비록 이런 표본 특성의 차이가 두 표본 간의 상당한 편모 편부 분포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로서는 이혼모표본의 통계는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아동표본의 통계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신뢰하고자 한다. 이혼모 표본은 여러가지 가정을 가지고 추출한 실험적 표본이어서 비록 변수 간 관계 분석에서는 유용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모집단을 설명하는 기술적 통계의 출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녀의 연령분포도 다를 뿐 아니라 가구주인 부모만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몇 십명의 작은 표본이기는 하지만 부자가정수가 모자가정수의 약 70%정도로 나타났다(김학주, 2006). 앞으로 전국자료를 바탕으로 비가구주를 포함한 무배우 편모 편부의 분포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요청된다.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및 고용상태)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 때, 직업이 있을 때 자녀와 별거의 확률이 높았다. 표본여성들의 결혼 지속기간에 따라 교육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교육수준별 분석은 결혼 지속기간 10-13년으로 제한하였다. 자녀와 별거 비율이 중학교이하 여성은 39%인 반면 고등학교학력은 30%이고 대학교이상은 23%이었다. 다음 직업별로 보면, 노동직에 종사하는 이혼여성의 자녀별거 확률이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무직인 여성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의 일부는 교

육수준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다변량 분석을 실시해야 취업의 직접적 효과가 밝혀지겠지만, 이혼여성의 취업은 자녀와의동거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2>의 마지막 패널을 보면, 이혼여성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주이든지 부모가구에 자녀로 속해 있는지 관계없이 부모와 동거할 때 12세 이하 자녀와의 동거확률도 높다. 편모의 자녀양육에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별거요인의 로짓 분석

자녀와의 별거에 영향을 주는 각 설명변수의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 즉, 순수효과 net effect)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로짓 분석에서는 세 가지 종속변수가 사용되었다. 아들 딸 관계없이 전체 자녀 중에 별거 자녀가 있는지 여부, 아들을 가진 여성표본 중에서는 별거 아들이 있는지 여부, 딸을 가진 여성표본 중에서는 별거 딸이 있는지 여부이다. 각 표본마다 2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에는 연령, 교육, 성별 자녀수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모델에는 직업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지역, 종교 등이 부가되었다. odds ratio는 1이상이면 긍정적 관계, 1이하이면 부정적 관계를 의미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앞의 이변량 분석결과와 일관적이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별거요인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원교육을 제외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이혼여성의 교육수준은 자녀별거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표 3).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별거 확률이 높다. 즉, 이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양이 자녀 동거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별거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 효과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학력 여성에 비해 중학교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딸과의 별거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대학교이상 여성은 아들과의 별거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중학교이하 여성의 딸과의 별거 odds는 고등학교학력 여성의 2.5배이고, 대학교이상 여성의 아들과의 별거 odds는 고등학교학력 여성의 0.6배, 즉 60%이다. 고등학교학력 여성은 딸과의 동거는 대학교학력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능하지만 아들과의 동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들과의 동거에 교육비 등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양육권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즉, 아들의 경우 딸의 경우보다 이혼 남성이나 그 부모 즉 친조

<표 3> 이혼한 어머니의 12세 이하 자녀 비동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짓 모델

	자녀(γ)		아들(λ)		딸(δ)	
	1	2	1	2	1	2
<b>&lt;어머니특성&gt;</b>						
연령	0.996	0.992	1.001	1.002	0.994	0.987
교육 (고등학교)						
중학교이하	2.000 *	1.882 ^	1.497	1.455	2.700 *	2.490 *
대학	0.725 *	0.761 *	0.575 **	0.604 **	1.024	1.056
대학원	0.975	1.418	0.624	1.195	1.000	1.198
딸 수	1.197 ^	1.229 *	1.235 ^	1.254 ^	1.056	1.073
아들 수	1.500 **	1.432 **	1.275	1.303	1.342 *	1.290 *
현재 직업이 있음		1.369 **		1.278 ^		1.457 **
<b>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부모 비동거)</b>						
가구주, 부모 동거		0.052 **		0.113 **		0.038 **
자녀		0.765 ^		0.885		0.729 ^
자매		1.793 **		1.986 **		2.327 **
<b>종교 (무종교, 기타 종교)</b>						
불교		1.307 *		1.464 *		1.060
기독교 천주교		0.692 **		0.628 **		0.713 *
<b>거주지역 (도시)</b>						
표본수	1,967	1,967	1,222	1,222	1,212	1,212
종속변수 평균		0.286		0.305		0.271
Likelihood	26(6)	113(13)	20(6)	73(13)	11(6)	75(13)
Ratio chi sq(df)						
Pseudo R-squared	0.014	0.048	0.014	0.049	0.011	0.053

주: 1) ^ p<0.10, \* p<0.05, \*\* p<0.01

2) 자료: 2005년 인구 센서스 2% 표본

3) 표본은 모든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추정되는 이혼여성으로 <표 2>와 같음.

4) 각 모델의 분석은 한 명 이상의 (γ)자녀, (λ)아들, (δ)딸을 둔 여성으로 제한하였음.

부모의 양육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다. 아마도 생활비 등의 이유로 인해 중학교학력 여성은 딸과의 동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별거 확률이 고등학교학력 여성과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 표본수가 매우 적어서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뚜렷한 여성 학력별 유형은, 이혼여성의 자녀와의 별거가 단순히 이혼 부모간의 자녀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협상의 결과일 것이라는 가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면, 부모간의 분쟁협상의 결과는 여성의 학력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 학력과 자녀별거간의 분명한 부의 관계는, 때로는 전 남편의 지원까지 포함하여, 여성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자녀와 동거를 선택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경우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저소득 가정에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내지 이혼에 이른다는 속설과 일치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최소 한명의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았는데, 많은 자녀 수는 더 많은 양육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때, 자녀수의 효과는 교육수준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이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녀 동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자녀의 성별로 보면 아들의 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딸의 수는  $p <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하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교육비 등 생활비 때문인지 양육권 주장 때문인지 아들수가 많을수록 동거부담이 이혼여성의 자원을 능가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는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분석을 제한하고 있으나 별거의 결정에는 차후의 양육비용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에 의하면 약 66%의 표본여성이 현재 취업중인데, 앞 이변량 분석에서와 같이 취업여성의 경우 비취업 여성에 비해 자녀 별거의 확률이 더 높다. 취업의 경우 인과관계는 양 방향이 다 가능한 것 같다.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이 어려워 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자녀가 없을 때 취업이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혼여성의 취업이 자녀와의 동거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무엇보다 취업한 이혼여성의 낮은 임금이나 긴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임금 때문에 취업에 따르는 자녀양육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긴 노동시간 때문에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아동은 취업여성의 부모 즉 아동의 외조부모나 다른 친족이 양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 〈그림 6〉의 아동표본 분석에서 무배우 편모가 가구주일 때 노동직을 포함하여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혼모 분석에 의하면 아동과 별거하는 이혼모의 취업률도 높다.

자녀와의 동거를 증가시키는 요인, 즉 자녀 별거를 감소시키는 중요 변수는 가구구성 즉 이혼여성의 부모와의 동거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보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주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주는 자녀와의 별거 odds가 0.05배(즉, 5%)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주인 이혼여성은 거의 모두가 모든 자녀와 동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가구주의 자녀인 여성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주 여성에 비해 자녀 별거 odds가 0.8배이다. 즉, 이혼여성의 부모와 동거는 자녀 별거 확률을 감소시키지만,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보다 그 감소정도가 현저히 크다. 다시 말해 이혼모가 가구주일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를

모신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의 가구에 편입하는 여성 중에는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주의 자매인 여성은 모든 가구유형중 자녀 별거 odds가 가장 높아서 부모 비동거 가구주 여성의 1.8배에 달한다. 가구구성에 따른 아들과 딸 각각의 별거의 odds도 전체 자녀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흥미롭게도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가진 여성에 비해 불교신자는 자녀 별거 확률이 약간 높게,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는 별거 확률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종교단체의 후원 등을 포함하여 종교자체의 영향인지 종교와 다른 변수간의 상관관계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 불교신자가 기독교 신자에 비해 좀 더 남성중심적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결과가 아닐까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혼여성의 전 남편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수적인 남편이 자녀 특히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IV. 논의 및 결론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청장년층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혼 종료는 줄어드는 추세이겠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이혼율이 급증하여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편모가정의 문제라고 인식되지만, 본 연구는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교육수준이, 편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2세 이하 아동의 편부모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유형은 양친가구, 별거형 부와 모, 무배우 부와 모 등으로 나누었다. 별거형 모와 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한쪽 부모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경우이다. 부부가 별거중인지 필요에 의해서 단순히 복수의 가구를 형성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별도의 유형으로 묶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여러 가구유형의 부와 모 중에서 무배우 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양부모 가구와 비교하면, 양부모의 경우 부는 모에 비해 대학이상 비율이 높고 중학교이하 비율이 낮지만, 무배우의 경우 부의 중학교이하 비율이 모보다 현저히 더 높다. 별거형 부의 경우 교육수준의 분포가 양부모가구 부와 무배우 가구 부의 중간정도이었다. 나아가 편부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도 편모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물론 모자가정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연구자

료는 부자가정의 환경이 모자가정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동의 편부모의 특성은 사별부모와 이혼부모를 모두 포함한다. 즉,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자가정에는 성역할 분담에서 모성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실제로 편부의 교육수준이 편모보다 낮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혼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모자가정의 형성이 어렵다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이혼모표본을 사용하여 이혼여성의 입장에서 12세 이하 자녀와 비동거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동표본 분석결과와 일관적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자녀비동거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자녀비동거의 확률이 중학교이하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 대학이상의 순서로 높았다. 또 직업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자녀비동거 확률이 높았다. 그 외 이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자녀수, 직업유무, 가구구성 즉 부모동거여부 및 가구주여부, 종교, 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비동거를 뚜렷이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이 자녀동거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이런 결과는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환경이 열악하고 취업의 기회가 서비스업 등 일부 저임금부문에서만 열려있는 편이어서부모 중 한사람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면 편모의 어려움이 편부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아예 편모가정의 형성이 어렵고 그런 경우 자녀양육의 책임은 편부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는 편모가정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의 입장에서는 편모가정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양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많은 편부가 그의 부모가 가구주인 가구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은 편이어서 지원의 양이나 질이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양부모가구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편부가구의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특성화된 사회화 및 성별 역할분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편부의 자녀양육 기술이나 경험이 편모보다 부족할 것인데 그에 더하여 편부의 교육수준이 편모보다 낮다는 것은 편부가구가 아동의 양육환경으로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세 이하 아동의 가구유형분포를 보면 별거형을 포함하면 편모가구의 수가 편부가구의 두 배 정도로 많다. 그러나 무배우 유형만 보면 편모와 편부 가구수의 비율이 약 4:3 정도로 그 차이가 훨씬 작다. 모자가정뿐 아

나라 부자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모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정지원법으로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부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한부모들이 당면하는 과제는 동일하다.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집단 모두 한 부모가 수입을 위한 일과 자녀 양육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남성의 아버지역할도 증진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기정 (2005)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9): 15-26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http://www.kosis.go.kr> (2010년 10월 접속)
- 김미숙·박민경·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2)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2-1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5-1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태진·김유경·송수경 (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1-12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 (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1): 129-144
- 김현정 (1999) “자녀양육비 결정요인 및 영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학주 (2006)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한국인구학》 29(3): 73-87
- 김혜란·박은미·오정수·정익중·허남순·홍순혜 (2004) “가족형태에 따른 빈곤아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 동광 100: 3-44 (발췌: 허남순 외 《빈곤아동과 삶의 질》)
- 송다영 (2006)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2006: 327-333
- 유희정·김정자·임선희·윤영숙·김영옥·이민진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개발원
- 이상헌 (1998) “편부가정의 실태와 지원방안” 《보건사회연구》 18(2): 106-135



- 이찬진 (1999) "분리·해체된 편부·편모자가정의 생활보호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14: 36-37
- 이태진·노은정(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요구" 《보건사회연구》 22(2): 72-103
-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40-13,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계숙(2008) "한부모 가족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 발달: 동거 부모와 주 양육자 영향" 《아동학회지》 29(3): 207-222
- 정윤남 (2002) "부자가정 자녀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미(2005)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빈곤실태와 지원정책연구: 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조윤주(2006)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문제에 관한 연구: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의 법적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숙 (2005) "저소득 여성세대주의 자립지원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저소득 여성세대주 가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논문
- 최외선·김갑숙·최선남 (2001) "편부모 자녀의 의사소통과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학》 8(2): 191-207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한인영·이용우·유서구·박명숙·김주현 (2007) "아동 신체학대 발생의 영향 요인: 한부모 가구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87-216
- Amato, P.R. (2010) "Research on Divorce: Continuing Trend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50-666
- Amato, P.R. & J.M. Sobolewski (2001) "The Effects of Divorce and Marital Discord on Adult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900-921.
- Cherlin, A (2005) "Public & Private Families: A Reader" (4th edition), Boston: McGraw Hill
- Frisco, M. L., Muller, C., & Frank, K. (2007) "Parents' Union Dissolution and Adolescents' School Performance: Comparing Method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721-741.

- McLanahan, Sara (2002) "Life without Father: What Happens to the Children?" *Contexts* 1(1): 35-44
- Potter, D. (2010)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933-946
- Powers, D. A. (2005)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the Risk of First Premarital Birth in the Presence of Correlated Unmeasured Family Effects" *Social Science Research* 34: 511-537.
- Strohschein, L. (2005) "Parental Divorce and Child Mental Health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286-1300.
- Sun, Y., & Li, Y. (2002) "Children's Well-being during Parent's Marital Disruption Process: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42-762.

[2010. 12. 26 접수 | 2011. 6. 14 심사(수정) | 2011. 6. 17채택]

##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Mother versus Single-Father Households of Children 12 or Younger: Focusing on Divorced Parents**

*Yean-Ju Lee · Seung-Kwon Kim*

With a substantial rise in divorce rates since the mid 1990s, single-parent households are increasing rapidly in Korea. Often it is believed that children in single-mother households suffer the most economically and socially with the marital disruption of the parent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in Korea the socioeconomic status of single-father households may be lower than that of single-mother households mainly because low-income divorced women are not able to form their own households with children. The analysis is based on two sub-samples from the 2% sample of the 2005 Census, one, with children 12 years old or younger and, the other, with divorced mothers of children of the same ages. Th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eviously-married single fathers show the lowest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status among 6 groups of parents: fathers and mothers from two-parent families, fathers and mothers from married but spouse-absent families, and previously-married single fathers and mothers. Divorced mothers' likelihood of living apart from their children has a strong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with the highest likelihood among women of middle school or lower education and the lowest likelihood among women with college education. Although single mothers comprise a larger percentage of single-parent households, single-father households demonstrate a particular vulnerability with their weak socioeconomic status.

**Keywords:** Household type, Single-father households, Single-mother households, Socioeconomic status, Divorced mothers